

[붙임]

## 2023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

- (재활용의무율) 「자원재활용법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22-269호('22.12.30.)로 결정·고시
- (분담금 단가) 「자원재활용법」 제29조(분담금 등) 등 관련법령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공동운영위원회('22.10.27.)에서 결정

품 목		재활용 의무율	분담금 단가 (원/kg)	비고
금속캔	철 캔	0.845	88	
	알루미늄캔	0.807	139	
	유 리 병	0.728	40	
종이팩	일 반 팩	0.293	260	
	멸 균 팩	0.109	559	
PET병	단 일 무 색	0.800	150	
	단 일 유 색	0.834	251	
	복 합 재 질	0.856	386	
발 포 합 성 수 지	EPS(전기용품 등)		69	
	EPS(가공, 농수산, 식품 등)	0.866	80	
	기타발포(EPP, EPE 등)		270	
	P S P	0.532	315	
	P V C	0.385	973	
기 타 합 성 수 지	단일재질 용기류·트레이	PET재질	226	
		PET재질 이외의 나머지 재질	0.870	105
	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*	0.860	363	
합성수지재질 필름류 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)		0.860	363	

\*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·쇼핑백 포함(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)

- ※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, '재활용 어려움 등급' 포장재는 2023년도 분담금 단가의 10~20% 할증 (단, 알루미늄캔, 유리병, 일반팩과 멸균팩은 부과금 적용 전 단가 기준으로 적용)
- (20% 할증) PET병, 유리병, 종이팩, 알루미늄캔, 단일재질 용기류·트레이(PET재질 이외의 나머지 재질), '재활용 어려움 등급' 포장재 중 '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' 해당품목(환경부고시 제2021-57호 제5조제3호)
  - (15% 할증) 발포합성수지, PSP, 단일재질 용기류·트레이(PET재질)
  - (10% 할증)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 등

다만,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(합성수지재질필름류)은 할증 제외

PVC는 '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(환경부고시 제2021-3호)' 중 '포장재별 재질·구조 세부기준'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품목(단일재질 용기류·트레이, 복합재질 및 필름·시트형 등) 할증을 적용